

무배당 교보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

2012년 11월 1일 개정

무배당 교보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4조 (계약자)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속 근로기간(또는 퇴직연금제도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이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통지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3. 급여 등의 지급지시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6. 적립금의 반환통지
 7.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 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 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 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기타사항
- ②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24조(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28조(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1조(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 1. 회사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업형)으로의 변경
- 2. 회사의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

제1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일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

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표준부담금은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2. 보충부담금은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3. 특별부담금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4.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18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익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퇴직연금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

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 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명부 사본

제23조 ~ 제25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3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적용)

-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및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부담금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 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2 + 지표금리×1)/3

③ 제1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2%)로 적립됩니다.

제24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 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 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

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일부터 1개월 초과 1년미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보험세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이때, 부담금 최초 납입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과 「금리연동형 적용이율×80%」중 높은 이율로 하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분할 운용자시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⑧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하 “중도해지부과액”이라 합니다) 및 조기이전수수료를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부과액 및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 및 조기이전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에게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제26조 ~ 제29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7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적용)

① 이율보증형 적립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정한 매월 1일, 16일의 지표금리(이하 “기준이율”이라 합니다)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단위보험 설정일

에 설정된 단위보험 규모에 따라 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부담금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회사가 정한 매월 1일, 16일의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합니다. ※ 1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3× A1+0.7× A2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 A1+0.3× A2 A1 : 국고채(2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 A1+0.3× A2 A1 : 국고채(3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4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8× A1+0.2× A2 A1 : 국고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8 \times A1 + 0.2 \times A2$

A1 : 국고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 수익률의 평균값

③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2%)로 적립됩니다.

제28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 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⑦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별표1참고)이 적용된 금액이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다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조정률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하 “시장가격조정액”이라 합니다) 및 조기이전수수료를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3항의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액 및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시장가격조정액 및 조기이전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에게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제30조 ~ 제41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용어의 정의)

①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②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③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④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⑤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급여(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금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3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⑦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다만, 조기이전수수료를 잔여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조기이전수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에게 지급통지를 받은 날+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제33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제3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5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특별계정 운용보수)와 매년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를 차감합니다. 다만, 자산관리수수료를 별도 납입할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주식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전환사채, 신

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2) 채권형

채권(자산유동화증권 등 포함)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30%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50%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3) 주식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30%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50% 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4) 인덱스혼합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순 자산의 40% 이내를 투자하여 KOSPI, KOSPI 200 지수 등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 가. 주식관련파생상품과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 순자산의 10% 이내가 되도록 운용합니다.
- 나.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30%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 다.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순자산의 50% 미만이 되도록 운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35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

도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1조(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37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0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1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42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3조 (인감신고)

-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외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권유를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 (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에 (1- 시장가격조정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다만,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계산시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1 + i_j) / (1 + i_h)]^{n+\varepsilon/\eta}$$

MVA 의 최대한도는 5%, 최소한도는 0%로 함

[2 년, 3 년, 4 년, 5 년 이율보증형 MVA]

$$MVA = 1 - [(1 + i_j) / (1 + i_h + 0.5\%)]^{n+\varepsilon/\eta}$$

MVA 의 최대한도는 10%, 최소한도는 0%로 함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η : 365 또는 366

i_j :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의 기준이율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기준이율(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i_{h-1}: 해지일에 잔여보증기간 보다 작거나 같은 적용이율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다만, 잔여보증기간이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i_{h+1}”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해지일에 잔여보증기간 보다 크거나 같은 적용이율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적용이율의 기준이율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3. 해지환급금은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하여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무배당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주된 보험 계약에서의 가입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시 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종신 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 9 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효력은 그 때로부터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하며, 연금지 급개시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11 조 (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가입자가 이 특약에 가입한 날로 합니다.

제 3 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계약의 가입자 중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제 4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가입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연금신청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 2.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가입자는 제 1 항 제 1 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전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가입자의 임의해지)

- ① 가입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는 제외) 이 특약을

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11 조(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가입확인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는 계약일부터 확정연금 지급 최종일까지입니다.

제 2 관 부담금의 납입(가입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 (부담금의 납입)

이 특약의 부담금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수령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관 급여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생존연금 지급기준표”(별표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적용이율의 적용)

- ① 이 특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이하 “적용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적용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하여 결정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부담금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기준이율]

이 특약의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한 이율을 말합니다. 이때 운용자산이익률이란 직전 6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율을 말하며,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3년), 회사채수익률(무보증, AA-, 3년), 통화안정증권수익률(1년)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text{※ 기준이율(\%)}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text{지표금리} \times 1) / 3$$

- ③ 제 1 항의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적용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적용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2%일 경우), 적립금은 적용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2%)로 적립됩니다.

제 11 조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4 관 급여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급여 등 청구시 구비서류)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급여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3 조 (급여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2 조(급여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 9 조(급여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가입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4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15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생존연금]		
금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종신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20년,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 집중형 10년보증 (1형, 2형) - 집중형 30년보증 (1형, 2형, 3형)
확정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확정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
상속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금지급시점-1년」 계약해당일의 적립금을 직전 1년간의 적용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금 지급)

(주)

1.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금이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 등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및 확정연금형에서 이 특약의 적용이율이 특약 체결시점의 적용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특약 체결이후의 적용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적용이율」(연복리 2.2%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특약건별로 적용되는 적용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
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5.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보증) 1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
시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집중형(10년보증) 2형은 집중연금 개
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6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6.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보증) 1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
시 후 11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집중형(30년보증) 2형은 집중연
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16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하며
집중형(30년보증) 3형은 집중연금 개시시점이 연금지급개시 후 21차년
시점인 연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7.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보증)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용이율과 연금
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동일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부터 5년간
다른 기간의 연금액 2배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가입자는 연금
지급개시시점 이전에 [연금지급개시시점, 연금지급개시 후 6차년 시점]
중 집중연금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보증)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용이율과 연금
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동일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부터 1형의
경우 20년(2형은 15년, 3형은 10년)간 다른 기간의 연금액 1.5배에 해
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가입자는 연금지급개시시점 이전에 [1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11차년 시점, 2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16차년 시점, 3
형은 연금지급개시 후 21차년 시점] 중 집중연금 개시시점을 선택하여
야 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집중형(10년보증)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변
동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 이후 5년동안의 연금액이 다른 기간의 연
금액 2배에 해당하는 연금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의 집중형(30년보증)은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적용이율이 변
동될 경우 집중연금 개시시점 이후 1형의 경우 20년(2형은 15년, 3형
은 10년)동안의 연금액이 다른 기간의 연금액 1.5배에 해당하는 연금
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시에도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보증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12. 확정연금형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
년, 30년, 100세[(101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시에도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100세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기간은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13.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
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101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
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